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17. 2. 12. ~ '20. 3. 27. 내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 선정규모** : 총 760개사 내외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70% 이상은 해당 권역* 內 소재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 서울권, 경인권(인천·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 경남), 제주권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7. 2. 12. ~ '20. 3. 27. 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신청자격 중 '업력' 검토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1회 창업한 경우 :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7. 2. 12. ~'20. 3. 27. 인 기업(개인·법인)인 경우 ⇒ 신청 가능

◆ 2회 이상 창업한 경우

○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7. 2. 12. ~'20. 3. 27. 인 경우 ⇒ 신청 가능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17. 2. 12. ~ '20. 3. 27. 이지만, '17. 2. 11. 이전에도 창업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한 경우>

- ▶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 개인사업자가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승계의 경우 제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폐업기업 포함)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기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 개인사업자가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재창업)에 해당
- ▶ 개인사업자가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17. 2. 11. 이전에 설립한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신청 제외대상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참고 1 참조)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포기자)자도 지원 제외 대상임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 '20.7.22. 이전까지 해당사업의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본 공고 접수마감 이전까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조기수행 완료가 확인되는 경우 본 공고의 동 사업 신청은 가능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 지원사업,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하나 사업비 집행 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추후 안내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 기간 : 9개월 ('20.6월~'21.2월 예정)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p>▶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p> <p>▶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p> <p style="text-align: center;">< 총 사업비 구성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colspan="2">창업기업 대응자금</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총 사업비의 70% 이하</td> <td>총 사업비의 10% 이상</td> <td>총 사업비의 20% 이하</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비 구성 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총사업비</th> <th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colspan="2">창업기업 대응자금</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7,000만원</td> <td>4,900만원</td> <td>700만원</td> <td>1,400만원</td> </tr> <tr> <td>100%</td> <td>70%</td> <td>10%</td> <td>20%</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비목</th> <th>비목 정의</th> </tr> </thead> <tbody> <tr> <td>재료비</td> <td>•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td> </tr> <tr> <td>외주용역비</td> <td>•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td> </tr> <tr> <td>기계장치 구입비</td> <td>•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td> </tr> <tr> <td>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td> <td>•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td> </tr> <tr> <td>인건비</td> <td>•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td> </tr> <tr> <td>지급수수료</td> <td>•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td> </tr> <tr> <td>여비</td> <td>•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교육훈련비</td> <td>•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광고선전비</td> <td>•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td> </tr> </tbody> </table>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특화 프로그램	<p>▶ 각 주관기관별 전문성 및 특성화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아이템 검증,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수 운영·지원</p>																																										

□ **(접수기간)** 2020년 4월 6일(월) 14시 ~ 4월 23일(목) 18시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가입 및 사업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접수 마감 ('20.4.23.(목), 18시) 이후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협약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 온라인 신청절차 >

- ① 'k-스타트업' 사이트(https://www.k-startup.go.kr/) 접속 →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 ④ 초기창업패키지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 ⑧ 사업계획서·발표자료·증빙자료 업로드(용량 제한 20MB 유의) →
- ⑨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 (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일정은 신청한 주관기관으로 문의)

< 창업기업 평가 절차(안) >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현장확인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	사업계획 진위여부 등 심층 확인
신청기업	자격 적격자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발표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진행

* 서류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며, 현장확인 대상 및 최종선정자는 발표평가 점수를 근거로 결정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신청 자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평가 후에도 신청 요건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탈락처리 할 수 있음

② **서류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대표자 및 직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가점 포함)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사업공고일 기준)	가점	비고
1)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인당 1점	최대 3점
2) 스톡옵션 제도 도입	1점	
3)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참고 2> 참조)	1점	
4)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5) 최근 2년 이내('18~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각 0.5점	

* 1), 5) 각 항목별 가점은 최대 2점까지 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서류평가 면제 대상	비고
1) '18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 (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함)	아이템 핵심 요소 일치 여부 판단 예정이며,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운영
2) '19년 도전 케이스타트업 왕중왕전 우수상, 대상 수상자 (단, '19년 도전 케이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수상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같아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 당 1회에 한함)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은 신청 희망 주관기관 수요조사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창업진흥원 별도 안내)

< 서류평가 항목 >

세부평가	평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소 계	
2. 실현가능성 (Solution)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소 계	
3. 성장전략 (Scale-up)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소 계	
4. 기업 구성 (Team)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함, 창업기업 임의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평가 불가)

< 발표평가 항목 >

세부평가	평가내용
1. 문제인식 (Problem)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소 계	
2. 실현가능성 (Solution)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소 계	
3. 성장전략 (Scale-up)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소 계	
4. 기업 구성 (Team)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④ **현장확인** :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을 현장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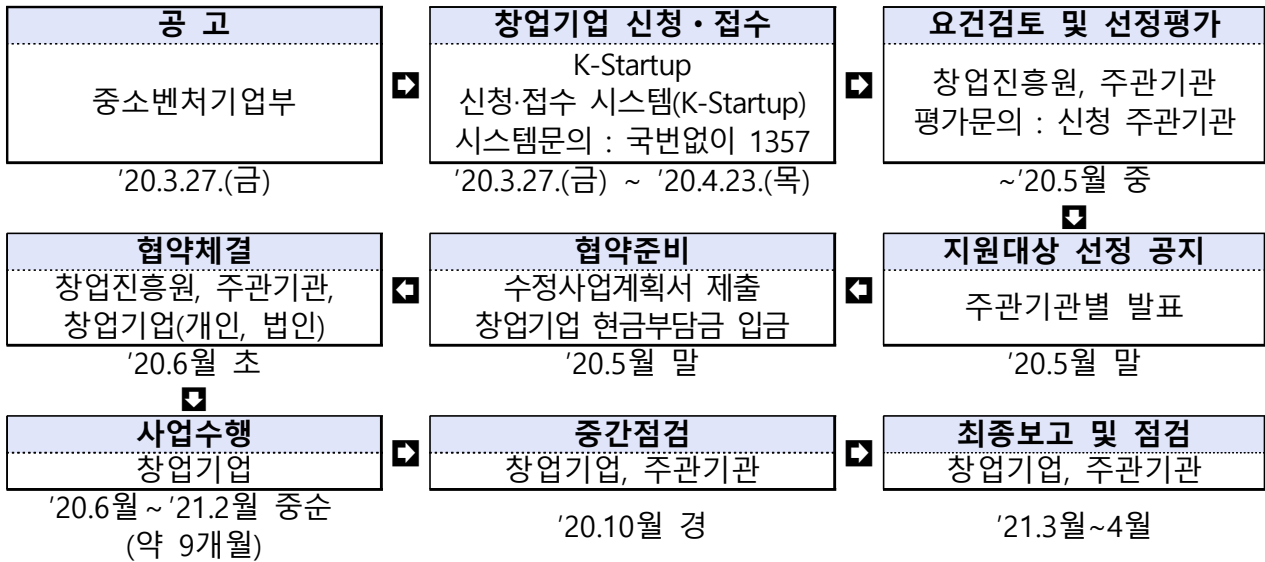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 지원기업 및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추진일정(안) >



6

선정자의 의무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화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사업비)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침 및 동 사업 세부(사업비)관리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기한('20. 5월말 예정)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수시, 최종)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동 사업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 법인 전환, M&A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자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예정
- 선정된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부분은 재직중인 제품 서비스 개발(프로그램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등) 직원이 질의에 대한 응답 가능
- 서류·발표평가에서 평가항목(가점 제외)별 배점의 60% 미만일 경우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각 주관기관에 신청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평가 등 문의 : 주관기관(참고 4 참조)

중기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09년~'20년) 중 동 사업 지원 제외 사업 목록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창업기획사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업터 사업화지원 (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일반형(Track 2), 투자형 지원자만 지원(신청) 제외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2019년)**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참고 2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항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약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업종분류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할 경우 서류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참고 3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지원규모

권역	기관명	지원 규모	권역	기관명	지원 규모
서울	건국대학교	15	충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9
	고려대학교	19		순천향대학교	23
	서울대학교	23		충북대학교	19
	송실대학교	19		한국수자원공사	23
	씨엔티테크	19		한남대학교	15
	엔피프틴(N15)	19		한밭대학교	15
	연세대학교	19		광주대학교	23
	인덕대학교	15		군산대학교	15
경인	한양대학교	23	호남	순천대학교	19
	가천대학교	19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15
	경기대학교	19		전북대학교	23
	단국대학교	23		전주대학교	19
	성균관대학교	23	대경	경북대학교	15
	수원대학교	15		대구대학교	23
	인천대학교	19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9
	인천테크노파크	19		동남	동서대학교
인하대학교	19	부경대학교	1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5	부산대학교	19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19	영산대학교		19
제주	넥스트챌린지	19	울산대학교	23	

참고 4

주관기관별 담당자 연락처(총 40기관)

권역	기관명	특화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
서울	건국대학교	지역거점 프로그램	02-450-3138
		실전형 창업교육	02-450-4287
	고려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2-3290-4000 02-3290-4814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대학원(빅데이터)	
	서울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2-880-2224
		실전형 창업교육	
	송실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2-828-7487 02-828-7481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씨엔티테크	투자유치 프로그램	02-3152-0915 02-3152-0928 02-3152-8648
		지역거점 프로그램	
	엔피프틴(N15)	투자유치 프로그램	02-1577-4379 070-4215-9966
		지역거점 프로그램	
	연세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2-2123-4414 02-2123-4849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인덕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2-950-7095 02-950-7357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한양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2-2220-2851 02-2220-1979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경인	가천대학교	지역거점 프로그램	031-750-6964 031-750-6963
		실전형 창업교육	
	경기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31-249-8667 031-249-8703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단국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31-8005-2866 031-8005-2867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대학원(IT융합분야)	
	성균관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31-290-5657 031-290-5658
		창업대학원(AI, 빅데이터, IoT)	

권역	기관명	특화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
경인	수원대학교	지역거점 프로그램	031-229-8561
		실전형 창업교육	031-229-8524
		창업대학원(AI, 빅데이터)	031-229-8574 031-229-8714
	인천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32-835-9642
		지역거점 프로그램	032-835-9643
		실전형 창업교육	032-835-9644
	인천테크노파크	투자유치 프로그램	032-250-2161 032-250-2162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인하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32-860-7943 032-860-7184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31-8041-0987 031-8041-0988 031-8041-0989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지역거점 프로그램	033-649-7198
		실전형 창업교육	033-649-7348
		창업대학원(빅데이터)	033-649-7187
제주	넥스트챌린지	투자유치 프로그램	070-7732-0203 064-732-0039
		지역거점 프로그램	070-7732-0202 064-732-0049
충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 프로그램	042-385-0645
		지역거점 프로그램	042-385-0795
	순천향대학교	지역거점 프로그램	041-530-4973
		실전형 창업교육	041-530-4836
	충북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43-261-3444 043-261-3431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한국수자원공사	투자유치 프로그램	042-629-2515 042-629-2517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한남대학교	지역거점 프로그램	042-629-8562 042-629-8564
		실전형 창업교육	042-629-8565 042-629-8566
	한밭대학교	지역거점 프로그램	042-828-8664 042-828-8663 042-828-8671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대학원(빅데이터)	

권역	기관명	특화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
호남	광주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62-670-2261 062-670-2243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군산대학교	지역거점 프로그램	063-469-8965 063-469-8966
		실전형 창업교육	
	순천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61-750-5432 061-750-5433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호남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전북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63-219-5534 063-219-5532 063-219-5467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전주대학교	지역거점 프로그램	063-220-2842 063-220-3196 063-220-2847	
	실전형 창업교육		
대경	경북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53-950-7657 053-950-7658 053-950-7959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대구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53-850-4377 053-850-4378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 프로그램	053-759-8617 053-756-7606
지역거점 프로그램			
동남	동서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51-320-2964 051-320-2962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부경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51-629-7472 051-629-7475
		지역거점 프로그램	
		실전형 창업교육	
	부산대학교	지역거점 프로그램	051-510-2994 051-510-1994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대학원(빅데이터)	
	영산대학교	지역거점 프로그램	055-380-9523 055-380-9103
		창업대학원(스마트팩토리)	
	울산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052-259-2107 052-259-1334 052-259-2108
지역거점 프로그램			

* 주관기관 소개자료는 추후 본 공고 게시물에 추가로 첨부 예정입니다.